

# 구매카드 약정 가이드

■ 약정 방법 : 주거래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약정

■ 삼성SDI 사업자등록번호 : 124-81-31282

약정은행	약정상품	대표번호
우리은행	상생파트너론(P73) or B2B(09R)	1588-5000
기업은행	상생결제협력기업서비스, 삼성SDI서비스	1566-2566
씨티은행	구매카드	1588-7000
KEB하나은행	E-구매론(E0130)	1599-1111
신한은행	전자방식외담대	1577-8008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1566-9944

## [삼성SDI 제출 서류]

원본)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서 (\* 4페이지 참조)

결제계좌 신고서 (\* 2페이지 참조)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결제계좌 통장앞표지

구매카드 약정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만 해당)

※보내실 곳: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삼성SDI 재경팀 대금지급 담당자(앞)

☞ 제출서류 중 결제계좌 신고서,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서는 당사/업체 각 1부씩 보관

☞ 구매카드 약정 후 1-2일 뒤 당사 시스템에 약정내용 반영

## [대금 지급기준]

구분	마감기준	대금지급일	비고
중소기업	1일 ~ 10일	당월 19일	중소기업은 모두 현금 지급
	11일 ~ 20일	당월 29일	
	21일 ~ 말일	차월 9일	
중견기업	월 1회 마감	차월 29일	
대기업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후		
계열사	월 1회 마감	(현금) 차월 29일 (어음) 현금기준 + 90일 후	

## ■ 사업장별 대금지급 담당자

기흥/수원 사업장 : 안보람 프로 (☎ 031-8006-3558)

구미 사업장 : 지은성 프로 (☎ 054-468-2257)

청주 사업장 : 박은영 프로 (☎ 043-200-0074)

울산 사업장 : 최소임 프로 (☎ 070-7092-6088)

천안 사업장 : 박연희 프로 (☎ 041-965-1274)

# 결제계좌 신고서

## [협력업체정보]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본점
대 표 자				<input type="checkbox"/> 지점
업 태		종 목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 ) - ( )	담 당 자		

위 [협력업체정보]는 반드시 모두 기입 必

## 표시□ [우리 상생파트너론 / B2B 은행계좌]

예금종류		계좌번호	
거래은행	우리은행 지점	예 금 주	
거래은행담당자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

## 표시□ [KEB하나은행 E-구매론 은행계좌]

예금종류		계좌번호	
거래은행	KEB하나은행 지점	예 금 주	
거래은행담당자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

## 표시□ [신한은행 전자방식의담대 은행계좌]

예금종류		계좌번호	
거래은행	신한은행 지점	예 금 주	
거래은행담당자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

## 표시□ [씨티은행 구매카드 은행계좌]

예금종류		계좌번호	
거래은행	씨티은행 지점	예 금 주	
거래은행담당자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

## 표시□ [기업은행 상생결제협력기업서비스 은행계좌]

예금종류		계좌번호	
거래은행	기업은행          지점	예금주	
거래은행담당자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

## 표시□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은행계좌]

예금종류		계좌번호	
거래은행	국민은행          지점	예금주	
거래은행담당자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

당사는 삼성SDI주식회사와 체결한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서”에 의거 위 은행계좌로 거래할 것을 약속하오며 대금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명판)

(인)법인인감(개인은 개인인감)

**삼성SDI주식회사 귀중**

#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서

삼성SDI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_\_\_\_\_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을”이 “갑”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의 지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약정서의 “물품대금”이라 함은 “갑”에게 제공한 모든 용역과 재화를 말하며, 현금 지급 조건의 계약 관계에 한하며, 비 정기적 거래 관계에 한한다.)

## 제 1조 적용범위

1. “갑”과 “을”이 체결한 본 약정서는 대금지불에 관련한 타 약정서보다 우선 적용되며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의 약정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을”은 “갑”과의 거래 종류 및 금액에 불문하고 “갑”에게 청구할 물품대금에 관하여서는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을 약정한다.

## 제 2조 은행계좌개설 및 서면통보

“을”은 “갑”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받기 위하여는 “갑”과 계약 체결한 금융기관 (이하 “병”이라 칭한다)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즉시 “갑”의 “결제계좌 신고서” (별첨양식)를 작성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3조 물품대금 지불

### 1. 현금지불 조건

“갑”은 “을”이 개설한 계좌에 현금을 “병”에게 입금함으로써 “갑”은 “을”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며, “갑”은 “병”의 입금확인을 “을”의 영수증 또는 입금표에 갈음한다.

### 2. 약속어음 지불조건

“갑”은 만기일이 60일 이내인 약속어음 “을”에게 발행,교부하고, “을”이 이를 확인, 날인한 영수증 또는 입금표를 인수 받음으로써 “갑”은 “을”의 물품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한다. 단,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구매카드 지불조건

“갑”은 물품대금에 대한 구매카드 결제시 대금 지불액, 결제일, 특정 여신기간 등의 자료를 “병”에게 제공함으로써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한다. 단, 구매카드 결제대금이 “병”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전자 외상매출 채권 지불조건

“갑”은 물품대금에 대한 전자 외상매출 채권 결제시 대금 지불액, 결제일, 특정 여신기간 등의 자료를 “병”에게 제공함으로써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한다. 단, 구매카드 결제대금이 “병”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구매카드 또는 전자외상매출 채권이 지불조건으로 선택된 경우, “갑”의 귀책사유 없이 본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갑”은 제2조에 규정된 결제계좌 신고서에 “을”이 지정한 현금결제 은행계좌에 현금을 입금함으로써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제 4조 물품 대금 지불 보류 등

1. “갑”은 “을”이 제2조에서 정한 서면통보가 없거나 서면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을”이 물품대금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2. “을”은 부가가치세법 제 5조 4항에 의거 사업자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을”의 물품대금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3. “갑”의 “을”에 대한 물품대금에 대해 “을”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이 집행된 경우, “갑”은 해당 (가)압류된 물품대금의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4. 제 3항의 (가)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 “갑”은 지급보류한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해제 또는 취소의 효력발생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갑”의 정기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 5. "을"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또는 추심,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 "갑"은 해당금액을 "을"의 채권자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5조 채권, 채무의 상계

"갑"은 "을"에게 지불할 물품 대금 중에서 "을"에 대한 채권액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 면책

- 1. 본 약정에 의한 대금결제와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갑"은 본 약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②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
  - ③ "을" 또는 "병"의 사정으로 "을"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기타 "갑"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 7조 약정의 변경 및 해지

- 1. 본 약정은 "갑"과 "을" 쌍방의 서면 합의 시에는 언제든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갑"과 "을"중 일방의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그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되는 날까지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본 약정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일방 당사자로부터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약정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정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3. 제 1항의 서면 약정해지 통지로 인한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제3조에 의거 지급 및 전송한 물품대금에 대해 "병"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 8조 효력발생

- 1. 이 약정은 “을”이 “갑”에게 제2조에 따른 제반사항을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 이상의 각 조항을 “갑”과 “을”은 충실히 준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에 기명, 날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삼성SDI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영 현

“을”

(인)

법인인감(개인은 개인인감)

- ※ 첨부서류(각 1부)
  - ①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③ 결제계좌 통장사본(예금계좌)
  - ④ 구매카드 약정 확인서
  - ⑤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서 및 결제 계좌 신고서